

제 60회 제 1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1월 5일 상오 11시 40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1월 5일 하오 2시 15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3명

결석의원 강영락, 조양순, 김성균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및 각 과장

교육감 신현중 및 각 과장

7. 의사일정

◆ 보고사항

- 1) 자동차 물색 상황 결과보고
- 2) 산정 1구동 도로 관계 교섭 결과보고
- 3) 청원서 접수 상황보고

◆ 부의안건

- 1) 목포시 교육위원회 직제 조례중 개정 조례안
- 2) 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직무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 3)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 세출예산안
- 4)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일시차입 건

8. 토의사항

◎ 자동차물색상황 결과보고

◇김 상 대 의원

- 금반 상경하여 자동차구입에 대한 물색만하고 귀임하였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 산정 1구동 도로관계 교섭 결과보고

◇김 상 태 의원

- 본 건 교섭 위하여 순천 철도국장 및 관계 (각 과장을 심방하여 교섭하였으나 현금의 형편으로 보아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다는 요지의 보고가 있었음.)

◎ 청원서 접수상황 보고 (유천서 분)

◇서기 김 상 연

- 낭독하다.

◇김 경 인 의원

- 유천서로부터 제출된 청원서내용과 동일한 보충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당시의 집행관이었던 부시장은 본인의 직책은 미완(未完) 하여놓고 일단 낙찰 선언된 유씨 측에 약간의 실수가 있다하여 제2번찰인 전 시직원 박승탁과 동업자에게 낙찰시켰다함은 도저히 이해가 난해한 처사이며, 사전에 당사자와 무슨 협약이라도 있었다고 아니볼 수 없는 것이다. 여사(女斯) 소규모의 공사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개재되었다고 볼 적에 좀더 큰 공사에 대하여는 더욱 의심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본 건에 대한 여성의원들의 적절한 처결을 앙망하는 바입니다.

◇김 남 진 의원

- 소개의원의 보충보고를 들은바 어마어마하기 짝이 없다. 집행관과 업자가 사전에 무슨 결탁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사건을 야기하였다면 묵인할 수 없는 사건이라하겠다. 당시의 집행관이었던 부시장과 사무당국에 질의할 것

을 동의한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정 응 표 의원

- 본 건에 대하여 김경인 의원은 집행부 측에 부정이 개재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규정짓는 감이 있으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은 입찰일 당시(본 의원이) 내무위원회사회 도중이었으나 그 전날 모처에서 들은바 관계업자들이 담합전술을 쓸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날 집행부 측에 여사한 수법에 넘지 않도록 경고함과 동시에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던 것이다.

- 본 건에 있어서는 재정법에 의거 사전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실수를 함으로써 이번 선에 낙찰케 된 것이니 그 사실을 밝혀야 될 줄 믿는다.

- 이 사업은 국고보조에 의한 사업이니만치 결코 어떠한 부정을 은폐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관계와 시간문제가 있는 것이니 본회의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회의규칙에 의거 내무위원회에 회부 조사하게 하여 차기의 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을 개외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김 남 진 의원

- 본 의원의 동의는 철회하겠다. 그러나 집행부 측에 이사건의 개괄적인 것만 물어보자는 것이다.

- 정 의원 동의를 표결한 결과 재석 13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되다.

◇부시장 이 병 규

- 본 건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자격을 부여받은 업자들이 법률행위를 감행하는 자리에서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 명백한 마당에 부득이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사실상 유씨 측에는 가석불금(可惜不禁)이었으나 부득이 취소하게 된 것이며 유씨 측이나 차점낙찰자이나 간에 담배 한 개 교환한 사실도 없

있음을 명백히 하여 두는 것입니다.

◇의장 김 삼 성

- 본 건 내무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선언.

- 오전회의 휴회 선언하다.

- 속개 선언하다.

(하오 1시 45분)

◎ 목포시 교육위원회 직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 목포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직무대리조례 중 개정조례

◇의장 김 삼 성

- 양 건 공히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의하게 할 것을 선언하다.

◎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신 교육감

- 누차에 걸쳐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지장을 초래케한 사실에 대하여는 송구불금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무조건 통과를 애걸 복걸하자는 심사도 아닌 것이며 단지 심의하시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말씀드리는 것이니 가부간 좋은 분위기 속에서 타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하는바입니다.

◇정 응 표 의원

- 본 건 십여일을 두고 논의하였던 것이나 우리 목포시민이 부담력이 없다는 것을 공인하고 수정에 수정안을 거듭 내놓았으나 미결로 둔 차(채)공백상태에 놓게 하였음은 의회의 책임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니 상임위 내무위에 회부심의하는 것보다 본 회의에서 즉시 심의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정 응 표 의원

- 교육청 예산심의시에는 전년도에도 사친회비문제와 학교측 각종 잡종금 문제를 위요하고 신랄한 질의가 있었을 적에 교육감은 의회를 둘러먹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금반에도 더 돌릴 수가 없는 것이다. 사친회비를 징수하면서 보건수당이라하여 2천만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계상하여 용인할 수 없는 것이니 특별부과금 전액과 이에 수반한 보조액 및 보건수당 2천만원까지를 삭감한 액으로써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교육위원회에 갱히(다시)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 - 칠청까지 있었다.

◇김 경 인 의원

- 정 의원의 동의도 지당한것이나 교육위원회에 갱히 회부하는 것보다 다음 수정안과 같이 본 회의 직석에서 심의할 것을 개의하다.

- 재청 - 삼청 - 육청이 있었으나 칠청이 없어 폐기하다.

- 수정안 액면생략 (별지초안참조)

◇김 창 희 의원

- 아직까지 예산이 통과 못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서무과장은 부결된 예산관계를 보고하기 위하여 상도(上道) 하였더라는 말을 들은바 있는데 교육청예산을 비트 한데는 모종 정치적복선이 개재되었다하여 본국으로부터 당지서에 본 건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지시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여사 시의회를 모독한 언사가 어디서부터 발설된것인지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단 3인을 구성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조사위원으로 박두순, 김창희, 천철수 의원이 지명되다.

◇서무과장 김 용 준

- 본인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아니 드릴수 없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산안

이 부결되었던 그 익일 상도하여 그 실정을 보고하였더니 예산의 공백상태는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니 일시(라도) 빨리 귀임하여 가부간 통과시키도록 질책만 받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 정치적 복선이 개재되었느니 어쨌느니 하고 자승자박적 태도를 취하였을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 즉시 의장님에게도 보고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정 응 표 의원

- 문사위원회에서 예산심의도중 서무과장은 문사위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였단 말을 들었다. 여사한 처사는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 시의회를 농하는 수법이라고 규정아니할 수 없는 바이며 서무과장은 계속하여 그러한 용의가 없는가.

◇신 교육감

- 매사 본인의 불찰로 이루어진 것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의원 동의대로라도 가부결정을 지여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 정응표 의원 동의 표결결과 재석 13명중 가 7표로 가결되다. 정응표의원이 금차회기를 명 1월 6일까지 1일간 연장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 가결되다.

- 사회교체

◇정 응 표 부의장

- 김삼성 의장은 내무분과 위원장직을 겸임하여 왔었던바 금반형편에 의하여 내무위원장직의 사임서가 접수되었기로 주지하여드립니다.

- 폐의 선언하다.

(하오 2시 35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1월 6일

시의원 천 철 수

시의원 김 성 균

작성자 서기 주 도 식

제 60회 제 2차 목포시의회 회의록

1. 개 의 : 단기 4290년 1월 6일 상오 11시 20분

2. 폐 의 : 단기 4290년 1월 6일 하오 12시 30분

3. 장 소 : 목포시의회 의사당

4. 사 회 : 의장 김 삼 성

5. 출석의원

재적 16명중 출석의원 10명

결석의원 김경인, 강영낙, 김일섭, 박두순, 조양순, 이정권 의원

6. 출석공무원

시장 하동현 및各科장

교육감 신현중, 학무과장 유창덕

7. 의사일정

◆부의안건

- 1)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견
- 2) 단기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일시차입의 건

8. 토의사항

◇신 교육감

- 작일의 의회결의로써 보건수당 2천만원과 특부전액을 삭감한 액으로써 예산을 편성하도록 회송하신바 있었으나

- 1) 교직원 보건수당은 국회의 건의로써 문교부 재무부에서 결정한 것으로서 재정부족 보조로써 충당될 것인바 봉급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에 근사

한 성질의 것이오니 삭감할 수 없는 것이고

- 2) 특별부과금은 현금(현재) 117교실이 부족한 형편으로써 의무교육 년차 계획에 의거 매년 수 교실식(씩)이라도 신축하는 것이 긴요한 것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결국 부득이 특부개당 80전 원안을 가결하여 주시도록 앙망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견을 끝내 고집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세부득한 형편이오니 좋은분위기속에서 해결하여 주시도록 재삼 바라는 바이올시다.

◇하 시장

- 본인이 교육위원회 의장 자격으로서 말씀 사루는데 수십일을 두고 본 건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는 바이올시다. 본 건에 대하여 특히 고충을 느끼고 있는 점은 시장의 입장에서는 담세력을 감안하여 특부를 부과치 않은다는데 절찬의 동의를 하는바 이오나 그 반면에 지방재정이 허용하는 한 국민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 타지방에 뒷떨어질 것을 추찰할때는 또한가지 유감스러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의원들께서는 두 가지중 한 가지를 택하시는데 특별한 영단 있으시기를 간망하는 바이올시다.

◇정 응 표 의원

- 시일반회계예산은 당면한 상수도 공사를 하기 위하여 건축재정을 수립하고 직원의 감원 또는 시유재산을 매각하여서까지 차(此)에 당하고 있었던바 설상가상격으로 남교동 시장의 화재로 인한 복구사업에도 여념이 없는 차제 교육위원회예산은 기준액을 계상하였다하여 임의로 방대한 예산을 내놓았던 것이니 시민의 수입은 고착되어 있는데 관영요금 인상 등등으로 극도의 생활상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 금년 중에 8교실을 신축함으로써 이 삼부의 교수를 면케된다면 또 별문제이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대지조차 물색 안된 막연한 학교신축을 고집하는 것도 이해키 어려운 것이다.

- 우리의회에서는 국민교육의 중대성을 모르는 것 같은 감을 주는 것이며 교육공무원은 국민학교 하나만을 직시하는 것 같으나 우리들의 시야로서는 전자가 앞서는 것이니 학교건축은 금년 중에 보류할 것과 보건수당 계상은 사친회비를 없앨 것을 전제로 국회통과를 본 것이니 금년 일월분의 사친회비 징수한 예를 보더라도 이중성격을 띄고있는 것이 판연한 것이다. 그러하

오니, 보건수당 2천만원도 예비비에 돌려 두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신 교육감

- 누차 사친회비문제를 논란하시는데 흡사변명 같으나 사친회비의 액면 등 결정은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교육감은 하등의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정 응 표 의원

- 본 건에 있어서는 토론 할대로 토론하였으니 그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특별부과는 전액삭감하고 보건수당은 예비비로 돌려 대기시키기로 하되 그 외는 항목별로 심의케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없으므로 폐기되다.

◇의장 김 삼 성

- 십분간 휴회 선언하다.

- 속개 선언하다.

(하오 12시 10분 현재)

◇명 남 철 의원

- 문교사회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하였던 4,420만원을 삭감한 안 대로 수정토록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에 이어 칠청까지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4290년도 목포시 교육위원회 일시차입의 건

◇김 성 균 의원

- 본건 부득이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하다.

- 재청 - 삼청이 있었다.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의장 김 삼 성

- 폐회 선언하다.

(12시 30분 현재)

위 회의록을 확인키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

단기 4290년 1월 7일

시의원 김 성 균

시의원 천 철 수

작성자 서기 주 도 식